
「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」 추진 방안

2024. 3.



여성가족부

「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」 추진 방안(요약)

1 추진 배경

-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*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,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**

* 한부모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58.8% 수준

** 양육비 채권 보유: 이혼·미혼 가구의 21.3%(6.5만), 이중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 25.9%(1.7만)

- 가족 해체 속에서 부모가 겪고 있는 사회적·경제적 위험에 아동도 빈곤·정서적 학대·방임 등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

⇒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 →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도입 추진

2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추진 방안

< 추진 방향 및 목표 >

추진 방향	1. 양육비 선지급 지원	<현행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을 「양육비 선지급제」로 전환> ① 합리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「양육비 선지급금」 기준 마련 ② 부정수급·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기능 강화 ③ 회수율 및 이행을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	
	2. 고의적 채무자 이행력 강화	<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추심 및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> ①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조사 권한 강화 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③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 단축	
목표	▶ (이행률) 42.8% ▶ (회수율) 15.3%		→ ▶ (이행률) 55.0% (~'27년) ▶ (회수율) 40.0% (~'29년)

1.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지원 방안

1 지원계획

□ (지원대상) ①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②기준 중위 소득 100% 이하 한부모가족의 ③18세 이하 미성년 자녀

-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「선지급 심의위원회」를 통해 심의·결정

※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1.3만 가구, 미성년 자녀 1.9만명 추정

□ (지원내용) 자녀 1인당 월 20만원(집행권원 금액 초과 불가), 18세까지 지원(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)

□ (관리방안) 부정수급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철저

- (양육비 채권자)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
- (양육비 채무자)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추진,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 징수

□ (관리체계 및 인력)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 및 징수 원스톱 추진, 관련 직원 충원 및 변호사 처우개선

- (지급절차)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소득수준 파악 및 양육비 이행 여부를 토대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결정에 따라 선지급
- (징수절차) 선지급 후 익월부터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및 미상환 시 강제징수 추진

□ (시스템 구축) 양육비 채권확보·이행지원, 제재조치,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「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」 구축

2 추진과제

- 합리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「양육비 선지급금」 기준 마련
 - 한부모가구의 세부적 자녀연령별·가구소득별 양육비용 조사를 통해 「양육비 선지급 기준표」 마련을 위한 별도 연구 추진
- 부정수급·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기능 강화
 - 現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심의위원회」 확대·개편하여, 「양육비 선지급」 지급 및 재개 결정, 부정수급·악용사례 심의 등
-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
 -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여, 「양육비 선지급」 권한과 책임 명확화
 -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소득·재산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(양육비이행법 개정)

2.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 강화

-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
(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, '24.2.29.)
 - * (현행) 이행명령→감치명령→제재조치
 - (개선) 이행명령→제재조치
-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(현행 '3개월 이상') 단축
(양육비이행법 개정)

순 서

I. 추진배경	1
---------------	---

II. 현황 및 문제점	2
--------------------	---

III.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추진 방안	4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①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지원 방안	5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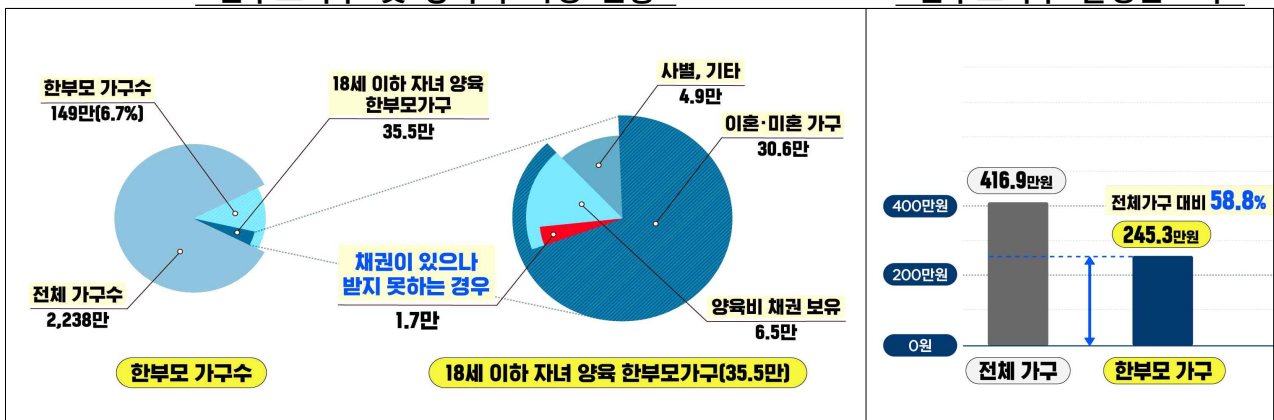
②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 강화	10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I. 추진배경

- **(한부모 실태)** 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, 양육비 이행 현실은 열악
 - (가구)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구는 35.5만가구
 - * 양육비 채권 보유: 이혼·미혼 가구의 21.3%(6.5만), 이중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 25.9%(1.7만)
 - (소득)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대비 58.8% 수준
 - * 국민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의 약 10배 이상인 45.8%

<한부모가구 및 양육비 이행 현황>

<한부모가구 월평균소득>



<출처>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(여성가족부)

- **(지원 필요성)** 가족 해체 속에서 부모가 겪고 있는 사회적·경제적 위험에 아동도 빈곤·정서적 학대·방임 등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
 - * 보호대상아동 중에 23.9%가 미혼부모·혼외자, 부모이혼 등의 사유로 발생('22년)
- 비양육부·모로부터 외면당하는 아동의 생존권 보장과 미래사회 인재로 성장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 필요
- **(사회적 공감대)** 최근 양육비와 관련된 부모간 사적갈등*이 사회이슈로 부각되며,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특수하고 공익적 성격이라는 공감대 형성
 - * 배드페어런츠(Bad Parents, '18년 개설) :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온라인상 공개, 양육비 채무자가 운영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

⇒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 →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도입 추진

II. 현황 및 문제점

1. 「양육비이행관리원」 설립에도 불구하고, 이행을 제고 성과 창출 한계

- (전담기관) 「양육비이행법」 제정('14.3월), 「양육비이행관리원」 설립('15.3월)
 - 상담부터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,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,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까지 종합서비스 제공으로 양육비 이행률* 점진적 증가
 - * ('15) 21.2% → ('17) 32.0% → ('19) 35.6% → ('21) 38.3% → ('23) 42.8%
- (한 계) 강력한 채권추심 제도가 뒷받침 되지 못해, 가시적 이행률 저조
 - 대부분의 양육비 채무자 소득·재산조치가 법원을 통해서 이뤄지고, 소송중심의 이행 지원체계로 비효율적
 - * (미 국) 연방 양육비 이행기관(OCSE)이 소득 원천징수 및 조세환급금 정보 등 활용
 - * (프랑스) 양육비이행원(ARIPA)이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양육비 직접 추심 가능

2.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실효성 미흡

- (제재조치) '21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도입·시행
 - * 제재조치('21~'23년) : 운전면허정지(406명), 출국금지(483명), 명단공개(72명)
- (실 효 성) 실제 제재조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이행 명령, 감치명령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,
 - 감치명령까지 2~4년 소요되며, 감치 인용률*도 낮아 실효성 미흡
 - * 양육비이행관리원 감치명령 신청 대비 인용률 61.9% ('15~'23년)

<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>



3.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은 지속적인 자녀 복리증진에 불충분

- (긴급지원) '15년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양육비(자녀 1인당 월 20만원) 지원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
 - * 지원현황('15~'23) : 미성년 자녀 3,146명 / 총 4,229백만원
 - ※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 제도개선 경과: ①지원기간 확대(9 → 12개월, '18년)
 - ②지원대상 소득수준 상향(중위 60% 이하 → 75% 이하, '22년)
- (문 제 점) 양육비 채권 추심소송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, 중위소득 75%이하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 지원은 자녀 양육에 불충분
 - 양육비 이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희망하는 한부모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

현장 목소리

- ▶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지원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, 제재조치 강화 및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개편 등 종합적 정책 개선 요구
 - ※ 양육비 이행확보 위해 가장 개선 필요한 제도: ①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 및 선지급 제도 도입(44.4%), ②미이행자 처벌 강화(31.5%), ③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(23.6%) 순('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)
- 또한,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수준이 낮고*,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·재산 조사 권한 부족 등으로 회수율(15.3%, '23년말) 저조
 - *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('21.6.10. 이전)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채무자 소득조회 결과, 보수월액이 민사집행법 상 압류 가능한 소득(185만 원) 이상인 경우는 19.0%에 불과

그간의 추진경과

- ◆ 「한부모가족실태 조사」 결과 발표 ('22.5월)
- ◆ 윤석열 정부 '정부 선지급제도 단계적 도입 검토' 국정과제 채택 ('22.5월)
- ◆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채무자 소득 분석 ('22.12월)
- ◆ 「제1차 한부모가족정책기본계획」 수립 ('23.4월)
- ◆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도입 발표 ('24.3월)

Ⅲ.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추진 방안

< 추진 방향 및 목표 >

추진 방향	1. 양육비 선지급 지원	<현행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을 「양육비 선지급제」로 전환> ① 합리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「양육비 선지급금」 기준 마련 ② 부정수급·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기능 강화 ③ 회수율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
	2. 고의적 채무자 이행력 강화	<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채권추심 및 제재조치 실효성 강화> ①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조사 권한 강화 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③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 단축
목표	▶ (이행률) 42.8% ▶ (회수율) 15.3%	→ ▶ (이행률) 55.0% (~'27년) ▶ (회수율) 40.0% (~'29년)

< 선지급제 도입 후 변화 된 모습 >

	도입 전 (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)	도입 후 (양육비 선지급제)
대상	중위소득 75% 이하 + 질병, 장애, 경제적 어려움 등 953명('23년)	1.9만명(추정) 중위소득 100% 이하 확대
금액	자녀 1인당 월 20만원	자녀 1인당 월 20만원
기간	최대 1년	18세까지 (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)
징수	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의 없이(금융재산 조회 불가)	양육비이행관리원 본인 동의 없이(금융재산 조회 가능)

1. 「양육비 선지급제」 지원 방안

1 지원계획

① 지원대상

- (자녀연령)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
- (가구소득)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(채권기준) 양육비 채권 보유 불구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구
- (대상선정)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한부모로 선지급 적격 여부를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를 통해 심의·결정

② 지원내용

- (지원단가)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*
 - 다만,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 불가
- * 200~299만원 소득가구(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)의 평균 양육비용 41만원 중 「한부모 아동 양육비」 지급액(21만원)을 제외하고 선지급, 독일,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조
- (지원기간) 18세 이하까지
 - ※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
- (지원규모)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1.3만 가구,
미성년 자녀 1.9만명 추정

③ 관리방안

- (지원중단)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 소득 기준 초과,
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이행시 등
- (회수시점) 선지급 후 익월부터 고지서 발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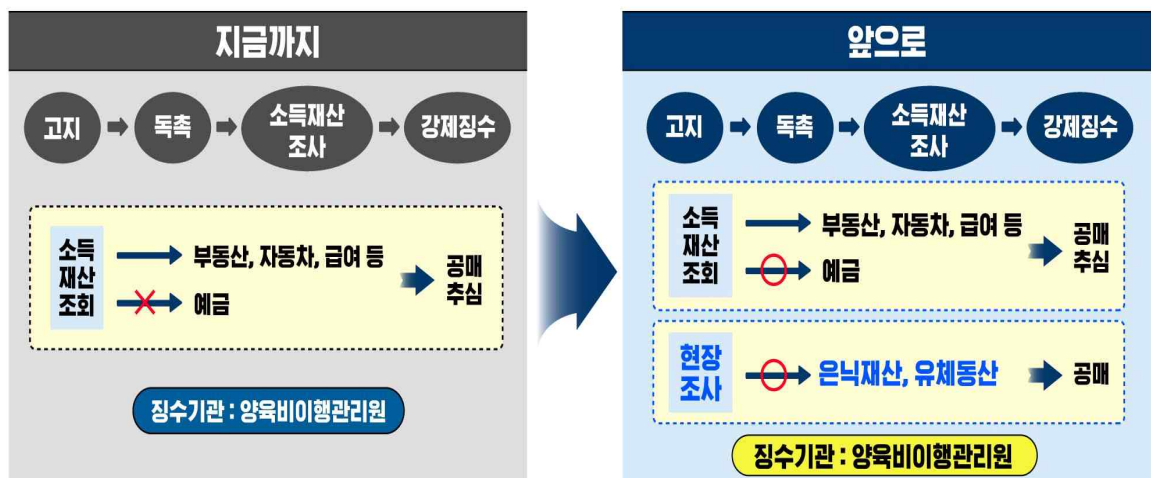
- (사후관리)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및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한 제재조치 추진
 - (양육비 채권자) 양육비 이행 및 소득변동 확인 등 정기 모니터링 실시
 - * 채권자 소득수준 변동 조사를 위한 행복e음 연계 추진,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검토 등
 - (양육비 채무자)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및 형사처벌 추진,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신속하게 선지급금 징수

5] 관리체계 및 인력

- (관리체계)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선지급 및 징수를 원스톱으로 추진하고, 유관기관과 연계·협업
 - (지급절차)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소득수준 파악 및 양육비 이행 여부를 토대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결정에 따라 선지급



- (징수절차) 선지급 후 익월부터 징수를 위한 고지서 발급 및 미상환 시 강제징수 추진



- (인력충원) 「양육비 선지급」 대상 심사·지급, 징수를 위해 양육비 이행관리원 직원 충원 및 변호사 처우개선

6 「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」 구축

- 양육비 채권확보·이행지원 신청부터 추심, 제재조치,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전반을 지원하는 「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」 구축
 - (시스템 구축)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, 신청 접수 시 지급·징수 등 업무처리가 한 곳에서 가능한 통합 전산망 구축
 - (대외기관 연계) 양육비 채권자 및 채무자의 소득·재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외기관 등과의 연계 추진*

* 행복e음, 금융기관 등 연계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및 사전협의 추진 등

<「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」 구축(안)>



① 합리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「양육비 선지급금」 기준 마련

- 자녀연령별·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양육비 지출액 실증연구를 토대로 「양육비 선지급금」 상한선 등 기준 결정

* 「21년 가족과 출산조사」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평균소득(월 245만원)과 유사한 월 200~299만원 소득 가구의 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41만원

< 자녀연령별·가구소득별 양육비용 >

(단위 : 원)

구 분	평균지출액	0-2세	3-5세	6-11세	12-14세	15-17세
전체가구	673,154	494,119	534,239	651,350	742,634	871,694
199만원 이하	371,038	351,923	317,941	375,972	408,621	394,545
200~299만원 (한부모가구 평균소득과 유사)	407,816	402,564	334,699	384,970	415,634	488,889
300-399만원	473,857	388,988	396,289	475,723	540,252	566,446

※ 출처 :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 (공교육비, 돌봄비용, 사교육비, 어린이집/유치원 이용료, 의복, 통신료 등)

- 한부모가구의 세부적 자녀연령별·가구소득별 양육비용 조사를 통해 「양육비 선지급 기준표」 마련을 위한 별도 연구 추진

② 부정수급·악용사례 방지를 위한 「선지급심의위원회」 기능 강화

- (구성) 現 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심의위원회」 확대·개편
- (기능) 「양육비 선지급」 지급 및 재개 결정, 부정수급·악용사례* 심의, 부정수급 등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등

* 양육비 채권자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여부 정기 모니터링 결과 및 양육비 채무자 상환 청구 시 의견 등을 비교 대조하여 부정수급자 적발

③ 회수율 및 이행을 제고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 권한 강화

- (독립 법인 설립)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여, 「양육비 선지급」 권한과 책임 명확화

현 행 (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)	개 선 (「양육비 선지급」)
▶(인 력) 인력 부족으로 현장조사 및 소득·재산 조사·분석 미흡	▶ (인 력) 인력 확충으로, 현장조사를 통한 은닉재산 탐지·압류·처분, 소득재산 분석 강화로 맞춤형 징수
▶(시스템) 채무자별 징수상황(고지, 소득·재산현황, 압류 등) 수기로 관리	▶ (시스템) 채무자별 징수상황(고지, 소득·재산현황, 압류 등)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

- (소득·재산 조사)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소득·재산조사 권한을 강화하여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 (양육비이행법 개정)

☞ 양육비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, 저소득 양부모가구와의 형평성 우려 불식

< 실제 사례로 본 선지급제 도입 기대효과 >

◆ 前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로 자녀 1명을 양육하는 A씨

구분	지금까지 (「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」 등)	앞으로 (「양육비 선지급」 등)
지급액	월 20만원	월 20만원
지급기간	최대 1년	18세 이하까지 (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3년 후 보완 검토)
징수	前 배우자 금융재산, 소송(재산명시·재산조회)을 통해 확인 (4~6개월 소요)	前 배우자 금융재산,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금융회사에 요청 (1주일 이내)
제재조치	인신을 구속하는 감치명령 결정 후에 前 배우자 제재조치 가능(2년 이상 소요)	감치명령 전 단계인 이행명령에서 前 배우자 제재조치 가능 (약 1년 소요)

2.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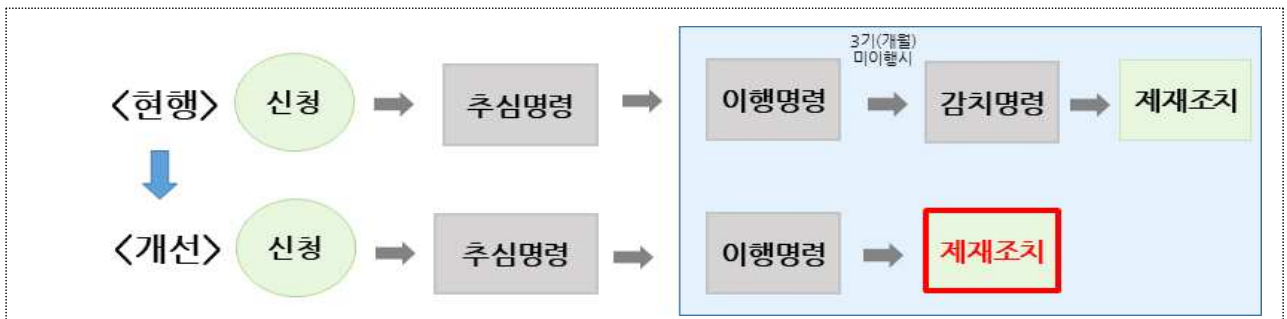
① 채무자의 소득·재산 조사 권한 강화

- 고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을 포함한 소득·재산 조회 추진
 - (현행) 채무자 동의 要 → (개선) 채무자 동의 不要 (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)

현 행	개 선
▶ 양육비 지급능력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를 받아 소득재산 조회	▶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본인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

②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

-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운전면허정지 등 제재조치 요건 완화
 - (현행) 감치명령 후→(개선) 이행명령 후 (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안 본회의 통과 '24.2.29.)



③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 단축

-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사전 소명 기간 단축 추진
 - (현행) 3개월 이상 → (개선) 10일 이상 (「양육비이행법」 개정)

현 행	개 선
▶ 여성가족부장관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	▶ 여성가족부장관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 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